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가단1482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6. 3.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3,809,425원 및 그 중 1,125,427원에 대하여 2020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6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,356,5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10,356,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피고 B은 2011. 6. 7. 주식회사 D와 신용카드 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. 피고 B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신용카드대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14. 9. 25.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. 10. 21.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5045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이 법원은 2015. 1. 29.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2,983,828원 및 그 중 7,474,752원에 대하여 2014. 1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, 이는 2015. 4. 14. 확정되었다. 2020. 8. 26.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잔액은 25,707,740원(= 원금 7,474,752원 + 이자 18,232,988원)이다(이하 위 채권을 '제1양수금채권'이라 한다).

나. E 주식회사는 2011. 8. 29. 피고 B에게 3,000,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율 각 3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 그 후 피고 B은 이를 연체하였다. F 유한회사(2016. 2. 24. 'F 주식회사'로 조직변경하고 해산)는 2015. 5. 18.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고, 2015. 6. 2.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 원고는 2019. 12. 13.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고, 2020. 1. 15.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 2020. 8. 26.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3,809,425원(= 원금 1,125,427원 + 이자 2,683,998원)이다(이하 위 채권을 '제2양수금채권'이라 한다).

다. G는 2019. 6. 15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(상속지분 3/11), 자녀인 H, I, J, 피고 B(각 상속지분 2/11)이 있다.

라.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H, I, J은 2019. 6. 24. H, I, J 및 피고 B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

C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다. 당시 피고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마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는 없었는데, 그 이후인 2019. 7.

1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C,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6,961,000원이었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L기관장, K조합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(양수금 청구)

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3,809,425원 및 그 중 원금 1,125,427원에 대하여 2020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(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)

가.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, 2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,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, 제1, 2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2/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체결된 이후 K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,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인 10,356,545원(= 이

사건 부동산의 시가 56,961,000원 × 피고 B의 상속지분 2/11, 원 미만 버림)과 원고가 구하는 2020. 8. 26.까지의 피보전채권액 29,517,165원(= 제1양수금채권 25,707,740원 + 제2양수금채권 3,809,425원) 중 더 적은 금액인 10,356,5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 그리고 피고 C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,356,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훈

별지

목 록

1. 전라남도 광양시 대 95㎡
2. 전라남도 광양시 대 86㎡
3. 전라남도 광양시 대 707㎡
4. 전라남도 광양시 전 142㎡
5. 전라남도 광양시 전 570㎡
6. 전라남도 광양시 답 70㎡
7. 전라남도 광양시 대 295㎡
8. 전라남도 광양시

[도로명주소] 전라남도 광양시

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 주택 82.6㎡

부속건물

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사 12.6㎡ 끝.

